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0. 5.(수)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1
제출일자	2022. 9. 23.
회부일자	2022. 9. 2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제정, 2023.1.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2.9.13. 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안 제2조 ~ 안 제6조)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부금 기탁서 접수, 기부자 본인여부 확인, 납부방법 안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8조 ~ 안 제23조)
 - 기금설치, 기금사용목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

금운용관, 기금계획수립 등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부칙

- 조례 시행(2023.1.1.)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

4. 관계법령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관련부서 협의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6.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제정, 2023.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2.9.13.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를 위한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음

□ 주요내용

- 안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위원 자격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실장 또는 국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유통·홍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

- 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시 고려사항*을 규정함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경상북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선정시 공고(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는 기금을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는 지정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으로 규정함
- 안 제10조(기금운용관)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과 기금 관리 대장 비치 및 증빙서류 관리를 규정함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 출납원**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실장 또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 안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경상북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 안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용 심의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안 제15조(위원의 해촉)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과 임기(연임 포함), 해촉 사유를 규정함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1. 당연직 위원: 부지사,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실장 또는 국장
 2. 임명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 안 제16조(위원장의 직무) ~ 안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대행 방법, 위원회의 회의 시기와 의결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함
- 안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1명)의 자격과 사무처리 내용을 규정함
- 안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는 기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을 규정함
- 안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와 안 제23조(기금의 결산)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결산보고서에 포함될 점

부자료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추진 가능한 준비행위의 종류와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제정, 2023.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2.9.13.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2022.9.16.)을 반영하여 적의성 있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형이 되는 일본의 고향납세(故郷納税)제도 사례의 경우 시행초기 2008년 81.4억엔(814억원 가량)에서 2021년 8,302.4억엔(8조 3,024억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조례의 시행 초기에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판가름할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부칙에서 특례를 두고 있는 만큼 시행일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조사와 발굴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 시행령 제7조에서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할 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기존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에는 모금된 기금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적극 공개해 기부자가 기부 의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기부와 사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됨
- 다만,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자격과 관련,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의 제3항제3호나목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 전문성 등의 제고 차원에서 추천 대상을 “민간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바
-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표준조례안)대로 해당 조문의 “의원”을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안의 합목적성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고향사랑기부금액 전망 방법

- 고향사랑기부금액 전망은 크게 국내 기부금 선행연구 및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한 방법과 일본사례를 기준으로 한 방법 등 두 가지를 활용함
 - 선행연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방법을 통해서 ①기부자 모집단을 소득세 10만 원 이상자, 기부경험자 등으로 선정하고, ②개인별 평균기부액은 정치자금 특례 기부액 88,011원으로 하였으며, ③고향사랑 기부의사자 비율은 55.5%로 하였고, ④고향사랑기부제도 인식률은 9.5%를 적용함
 - 일본사례 기준 전망에서는 ①전국민 대비 기부자 비율, ②지방세 대비 기부금액 등이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였고, 기부자 비율과 관련해서 개인별 평균기부금액은 88,011원을 적용하였으며, 비교대상 연도는 2016년과 2020년으로 하였음
- 전망방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액 전망액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시·도별 기부의사비율을 활용하여 시·도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참고2)와 같음
 - 선행연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전망에서는 987억 원 및 658억 원 등이며 일본사례 기준에서는 2016년과 비교할 때 814억 원, 2,901억 원이 전망됨
 - 일본사례를 기준으로 한 전망보다 국내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 전망이 보다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됨
 - 전망방법에서 제도 인식률이 9.5% 적용되었는데, 국내 시나리오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률이 20%, 30%로 제고될 경우를 추정하여 제시함
- ※ 출처: 김홍환,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5~6p

참고2

시나리오 별 시·도 기준 기부금액

(단위 : 억 원)

구분	시나리오 1 (소득세 10만 원 이상자)			시나리오 2 (기부경험자)			시나리오 3 (인구 비중)		시나리오 4 (지방세 비중)	
	1-1	1-2	1-3	2-1	2-2	2-3	16년	20년	16년	20년
서울	50	106	159	34	71	106	42	102	148	452
부산	62	131	196	41	87	131	51	126	183	559
대구	39	83	125	26	55	83	33	80	116	355
인천	23	48	72	15	32	48	19	46	67	204
광주	33	69	103	22	46	69	27	66	96	293
대전	23	48	72	15	32	48	19	46	67	204
울산	5	10	16	3	7	10	4	10	15	44
세종	12	25	37	8	17	25	10	24	35	106
경기	50	106	159	34	71	106	42	102	148	452
강원	103	216	324	68	144	216	85	209	302	922
충북	62	131	196	41	87	131	51	126	183	559
충남	90	189	284	60	126	189	74	183	264	807
전북	78	164	246	52	109	164	64	159	229	700
전남	128	270	405	86	180	270	106	261	377	1,153
경북	95	199	299	63	133	199	78	193	278	851
경남	85	179	268	57	119	179	70	173	249	762
제주	50	106	159	34	71	106	42	102	148	452
소계	987	2,077	3,116	658	1,385	2,077	814	2,007	2,901	8,866
수도권	123	260	390	82	173	260	102	251	363	1,108
비수도권	865	1,819	2,730	576	1,213	1,819	713	1,758	2,541	7,767

주 : 시나리오 1 선행연구 기준 추정 소득세 10만 원 이상인 자, 시나리오 2 기부경험자 등

1-1, 1-2는 홍보효과로 제도인식 비율이 현재(9.5%)보다 2배(20%), 3배(30%) 늘어날 경우

시나리오 3은 일본사례 기부인구 비율 기준 2개 연도, 시나리오 4는 일본사례 지방세 비중 2개 연도